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7.26.)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 봉 기]

목 차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3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12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2. 개정이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의 이용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요건 완화 기준 신설(안 제10조)
 - 1) 요건 : 가공하려는 주산물이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 2) 절차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3) 완화 사유 :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6. 15. ~ 7. 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은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존치 의미가 없어 삭제하고, 가공시설 이용 요건 완화규정을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이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외 소득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

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2.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 업 자 :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지영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12월(6개월간)
 - 발전용량 : 20kw
 - 사 업 비 : 44,000천원(군 39,600, 자부담 4,400)
 - 연간수익 : 4,200 ~ 4,600천원 정도
 - ※ 수익금 사용

웅양면 곰내미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

나. 추진사항

○ 2022. 6. :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추진 중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웅양면 노현리 314 (주차장)	4,956	250	20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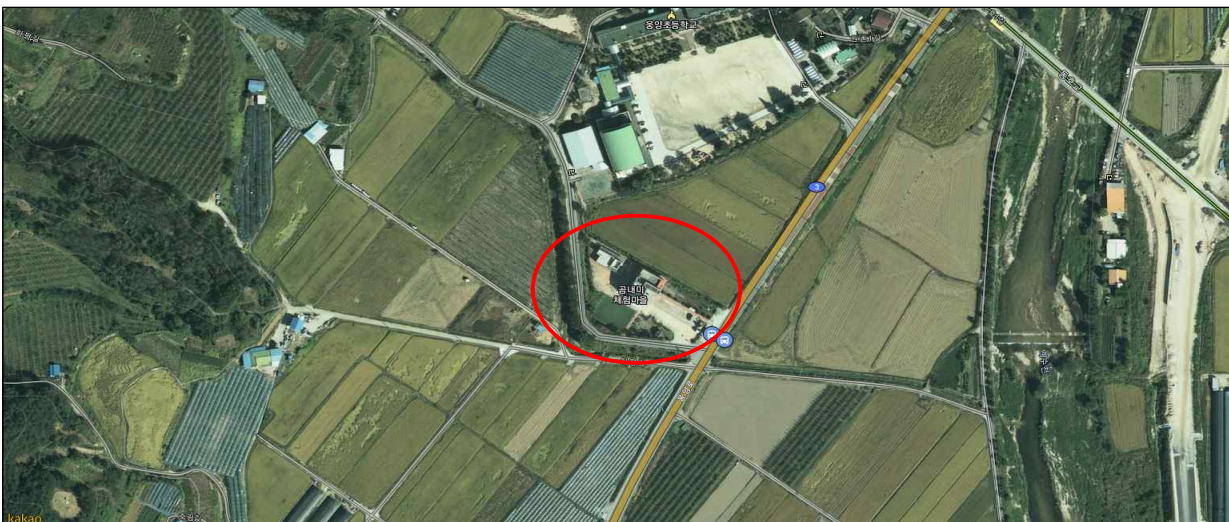
라. 향후 추진 계획

○ 2022. 7.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 예치

○ 2022. 7. ~ 8. : 전기발전사업 허가(경제교통과)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314 (지목:대지)



현장사진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창군 소유의 부지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2. 제안이유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예산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황

- 시설명 : 거창사과 푸드코트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푸드종합센터 옆)
- 규모 : 998.27㎡ (1층 535.13㎡, 2층 463.14㎡)

구분	면적(㎡)	용도	비고
합계	998.27	-	철골구조
1층	535.13	제품전시판매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463.14	휴식, 체험, 교육 공간 및 옥외휴식공간 등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나. 위탁사무

- 시설 : 푸드코트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 운영 :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음료 및 베이커리류 등 판매,

체험·교육 등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20. 8. ~ 11. : 푸드코트 디자인 컨설팅 용역 시행
- 2020. 11. ~ 2021. 4. : 푸드코트 실시설계 시행
- 2021. 11. : 입찰 및 낙찰자 선정·계약
- 2021. 12. : 거창사과 푸드코트 착공
- 2022. 4. :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례 제정
- 2022. 5. ~ 8.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비용 산정 용역 추진 중

라.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간)
 - 수탁대상 : 푸드코트 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등
- 위탁범위
 - 푸드코트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음료 및 베이커리류 등 판매, 체험·교육 등

마. 소요예산

- 금103,826천원 정도(3년간)
 - ※ 초기 운영(2년간) 적자운영 후 3년차부터 흑자운영이 예상되며,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22. 8. 완료)에 따른 위탁운영비 변동가능성 있음

4.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2022. 7.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2. 8. : 위탁비용 최종 산정
- 2022. 10. ~ 11. :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022. 12. : 협상 및 협약 체결

○ 2023. 1. : 위탁운영 실시

나. 관련법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다. 위탁운영계획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유지, 예산절감을 위해 2023. 1.부터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탁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함

I. 법적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II. 시설개요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사과 푸드코트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푸드종합센터 옆)
- 규모 : 998.27㎡ (1층 535.13㎡, 2층 463.14㎡)

구분	면적(㎡)	용도	비고
합계	998.27	-	철골구조
1층	535.13	제품전시판매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463.14	휴식, 체험, 교육 공간 및 옥외휴식공간 등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III. 위탁추진 계획

위탁선정 : 일반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 거창사과 푸드코트 운영위원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수탁대상 : 푸드코트 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등
-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성과 피드백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위탁범위

- 시설 : 푸드코트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 운영 :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음료 및 베이커리류 등 판매, 체험·교육 등

□ 선정기준

- 푸드코트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및 안정성 유지 능력
- 푸드코트 운영 효율성 및 투자 기대의 효과성 제고

IV. 향후계획

- 2022. 7.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2. 8. : 위탁비용 최종 산정
- 2022. 10. ~ 11. :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022. 12. : 협상 및 협약 체결
- 2023. 1. : 위탁운영 실시

V. 소요예산(안) : 위탁비용 산정 용역 시행중(2022. 8. 완료)

- 위탁비용 : 103,826천원(3년간) / 1년차 77,129, 2년차 26,697, 3년차 0
- ※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 ① (운영원가) 346,170천원 정도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200,639,492	- 6명 기준 - 중조제조업 노임단가 기준
	간접인건비	-	
	인건비 합계	200,639,492	
경비	고용부담금	37,854,748	
	복리후생비	7,050,424	
	전력비	22,608,311	
	용수비	2,848,169	
	차량유지비	3,726,248	
	통신비	3,103,596	
	수리수선비	2,565,959	
	홍보광고비	5,594,312	
	소모품비	5,359,122	
	안전점검비	5,202,144	
	지급수수료	2,507,367	
	교육훈련비	4,915,328	
	기타경비	4,554,350	
	경비 합계	107,890,077	
	순원가		308,529,569
일반관리비(2%)		6,170,591	- (순원가) × 2%
이윤(10%)		-	- 미산정
운영원가		314,700,159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31,470,016	- (운영원가) × 10%
총 운영원가		346,170,175	- (운영원가 + 부가가치세)

- ② (수입추정 방법) 판매수수료(사과 및 가공제품), 매장운영수입(음료 및 베이커리류 판매), 체험 및 프로그램 수입을 타 사례 기준으로 추정
- ③ (수지분석 결과) 1, 2년차 적자 운영 후 흑자로 전환

연도	민간위탁			비고
	원 가(A)	수 입(B)	수 지 차(B-A)	
1년차	346,170,175	269,040,822	- 77,129,353	
2년차	352,650,955	325,953,820	- 26,697,135	
3년차	359,254,442	373,517,213	14,262,771	
4년차	365,982,985	379,493,488	13,510,504	
5년차	372,838,976	385,565,384	12,726,409	

- ④ (운영비 지급방법) 추정 수입분만큼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협약하며 초과수입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과의 협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거나 운영비로 재투자

VI. 기대효과

-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운영으로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및 예산절감 효과
- 사과를 중심으로 한 판매, 문화 공간 조성으로 융복합산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 6. 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 6. 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 6. 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개정 2013. 6. 12)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행복농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2. 제안이유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287개소의 관리
- 나.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계	287	6	20	24	31	27	8	33	23	14	39	25	37
마을상수도	112	4	10	5	5	13	3	17	12	7	19	10	7
소규모급수시설	175	2	10	19	26	14	5	16	11	7	20	15	30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마. 수탁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저수조청소업 소지 업체

바. 주요 위탁내용

-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점검
- 취수원, 배수지, 급수설비 점검 및 긴급보수
- 누수 동결 등 수시정비 및 긴급 보수
- 각종 민원처리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참조

- 「수도법」 제47조 1항, 제55조 1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나.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7월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 2022년 8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2년 9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10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운영 : 2023년 1월

다. 소요예산 : 연간 350,000천원 정도

라. 위탁운영 계획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2022.12.31.)예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수도법」 제47조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55조 1항
 - 시장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II 시설 현황

-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계	287	6	20	24	31	27	8	33	23	14	39	25	37
마을상수도	112	4	10	5	5	13	3	17	12	7	19	10	7
소규모급수시설	175	2	10	19	26	14	5	16	11	7	20	15	30

※ 마을상수도 : 100명~2천500명, 20m³/일이상 소규모급수시설 : 100명미만, 10m³/일 미만
(2022년 286개소 ⇒ 2023년 287개소 / 제외-가조대초, 추가-위천황산, 신원소룡)

Ⅲ 위탁개요

○ 현 위탁업체 현황(2022년 계약기준)

수탁자	위탁대상	위탁기간	계약금액
(주)남강건설(대표 이상훈)	147개소	2018. 1. 1. ~ 2022. 12. 31.(5년간)	162,939천원
(주)다보건설(대표 이명호)	139개소	⇒ 연간계약시행	155,752천원
계	286개소		318,691천원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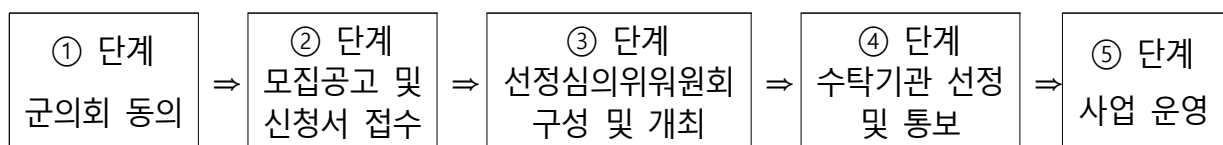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

○ 주요 위탁내용

-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
-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긴급보수·정비
-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 배수지 청소(연2회)
-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잡목 제거 등 환경미화
-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운영성과 평가자료 제출(연1회)
- 취수시설, 송·배수관로 누수 및 동결 등 점검 관리(월1회)
- 명절, 동절기, 갈수기 등 비상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수시)
- 각종 민원처리 등

○ 위탁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飲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5. 14.>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 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전문개정 2013.8.14.)

-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4조 (시설의 관리)

-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3조 (평가 및 지정)

- 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4.)
- ③ 군수는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 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8.14.)